|  |  |  |
| --- | --- | --- |
| **대리 수출화물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12호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6] 102호)를 실시한 이래 일부 지역과 기업들이 대리 수출화물과 관련한 조세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출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화물 《대리 수출화물 증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측이 이미 현행 조세정책 규정에 따라 증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였거나 또는 증치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는 國稅發 [2006] 102호 문건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이 공고 제1조에 열거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위탁측 소재지 세무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위탁측 소재지 세무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회신하여야 한다. 위탁측 소재지 세무기관이 회신으로 위탁측이 상술한 화물의 증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였거나 증치세 납세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회신에서 위탁측이 상술한 화물의 증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또는 증치세 납세신고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發 [2006] 102호 문건에 따라 집행한다.  3. 세무기관은 상술한 절차를 이행한 후 수출기업의 신청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리 수출화물 증명》을 보완 발급할 수 있다.  4. 이 공고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7월 1일부터 이 공고를 시행하기 전에 발생한 건은 이 공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1년 2월 12일  사본 송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  | **国家税务总局关于代理出口货物相关税收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12号  　　《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货物退（免）税若干问题的通知》（国税发[2006]102号） 下发执行以来，有地区和企业征询有关代理出口货物的税收问题。现就有关问题公告如下：  　　一、出口企业未在规定期限内申报开具《代理出口货物证明》的货物，凡委托方已按现行税收政策规定计提增值税销项税额或申报缴纳增值税的，不属于国税发[2006]102号文件第一条第四项规定的情形。  　　二、税务机关对属于本公告第一条列明的情形，须向委托方所在地税务机关发函调查。委托方所在地税务机关应及时回函。凡委托方所在地税务机关的回函确认委托方已就上述货物计提增值税销项税额或申报缴纳增值税的，不予征税；回函没有确认委托方就上述货物计提增值税销项税额或申报缴纳增值税的，按国税发[2006]102号文件执行。  　　三、税务机关履行上述程序后，可根据出口企业的申请向出口企业补开《代理出口货物证明》。  四、本公告自2011年3月1日起施行。2006年7月1日至本公告施行前发生的事项，可依据本公告进行调整。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二○一一年二月十二日    　　分送：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